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심 사 보 고 서

2025. 11.

보건복지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5년 3월 17일, 이주영의원 등 10인

나. 회부일자: 2025년 3월 18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제428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2025.8.18.)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소위원회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1차 법안심사제2소위(2025.9.23.)

상정, 축조심사, 의결(대안반영 폐기)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2차 전체회의(2025.9.24.)

상정, 소위심사보고, 의결(대안반영 폐기)

2. 제안설명의 요지

(이주영의원)

최근 경기도 소재의 한 병원 응급실에서 발생한 응급의료종사자에
대한 폭행 사건이 현행법상 응급의료 방해 금지 규정 위반으로 처벌
하지 못하고 단순 폭행사건으로 처리된 바 있었음.

이는 그 대상 행위가 응급의료 과정을 환자 보호자에게 설명하는 중에 발생한 것으로, 현행법 정의 규정에서는 응급의료를 응급환자를 위하여 행하는 상담·구조·응급처치 및 진료 등의 조치로 정의하고 있는 반면, 응급의료 방해 금지 규정에서는 그 금지행위 대상을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이송·응급처치 또는 진료로 한정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있음.

또한, 응급실 내에서 응급의료종사자에 대한 폭행 행위는 응급의료종사자의 안전은 물론 응급환자의 생명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것으로 폭행으로 인해 상해에 이르렀는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폭행 행위 자체에 대해서도 그 처벌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응급의료 방해 금지 대상 행위를 응급의료 정의와 같이 응급환자에 대한 상담·구조·이송·응급처치 및 진료 등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의료기관의 응급실에서 응급의료종사자를 단순 폭행한 사람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응급실 내 응급환자와 응급의료종사자의 안전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1항 및 제60조제1항).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오세일)

응급의료종사자가 응급환자에게 실시하는 상담·구조·이송·응급처치 및 진료 등의 의료행위는 환자의 적절한 치료와 안전을 위해 유

기적으로 행해지는 일련의 과정으로 볼 수 있으므로, 방해금지 응급의료의 범위에 상담을 포함하여 그 범위를 명확히 하고 응급의료종사자 및 환자의 보호를 강화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보임.

응급의료종사자 폭행의 처벌 규정을 신설하는 것은 응급의료종사자 및 응급환자의 안전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을 것으로 보임. 다만 폭행에 의해 상해에 이르는 경우와 상해에 이르지 않은 경우의 법정형을 동일하게 규율함에 있어서는, 상이한 죄질에 대해 일률적인 벌칙이 적용됨에 대한 우려가 있을 수 있다는 점, 또한 「형법」에서 폭행과 폭행치상의 형량을 달리 정하고 있는 것과의 균형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4. 대체토론의 요지

없 음

5. 법안심사소위원회 심사내용

(소위원장 이수진)

동 개정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그 내용을 통합·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함.

6. 찬반토론의 요지

없 음

7. 심사결과

대안반영폐기